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보고객지원국의 정보활용팀을 폐지하고,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며,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고,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정책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8조제3항·제7항)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공익과 사적재산권의 비교형량·보상규모 결정 등 다방면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표준특허 창출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에서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정책과로 조정하여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나.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정보고객지원국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활용팀의 각종 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정보관리과로 통합하고, 정보관리과의 산업재산권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업무를 정보고객정책과의 업무로 하는 등 정보고객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정보개발과를 정보시스템과로 명칭 변경

다. 특허심사기획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12조제3항·제10항)

하나의 출원에 의해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하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조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특허심사기획과의 국제조사 접수·발송 업무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업무로 조정

라.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 신설(안 제14조제2항·제11항)

증가하는 자원재생 분야의 기술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고 자원재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마.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